2026.02.23

HK market insight

미국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판결과 향후 미국 관세정책

흥국투자전략 **이영원** / (02)739-5848 / youngwon@heungkuksec.co.kr

- 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의 핵심 IEEPA관세 위법 판결
- 트럼프 대통령 포고, "IEEPA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글로벌 관세(무역법 122조 기반)"
- 새로운 관세 체계 확립까지 불확실성 증가 불가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IEEPA가 비상상황 시 대통령의 수출입 규제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관세부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불명확하고 조세,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향후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부과될 수 없으며 기존 관세의 환급 문제는 하급심(국제무역법원)으로 판단을 위임, 본격적인 법률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위법판결이 내려진 IEEPA관세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전체 관세의 절반에 해당하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새로운 관세의 3/4에 해당하는 결정적 항목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부과되었던 펜타닐 관련 관세(중국으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부과, USMCA조약에 해당하지 않은 캐나다 로부터 수입품에 35%, USMCA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멕시코 로부터 수입품에 25%),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부과되었던 각국의 상호관세(영국 10%부터 한국, 일본, EU 15%, 최대 50%),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부과되는 50% 관세, 정치적 이유로 브라질에 부과된 50% 관세 등이 모두 IEEPA에 근거한 관세다.

Tax Foundation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14일 기준 IEEPA관세 징수액은 총 1335억달러에 달하며 2026년 2월 20일까지 1600억달러 이상이 징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같은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산업별 관세로 징수된 관세는 490억달러).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Penn Wharton Budget Model에 따르면 IEEPA 관세 징수액은 매월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2026년 1월에는 208억달러에 달했고, 전체 관세에서 IEEPA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꾸준히 증가, 지난 1월에는 5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IEEPA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막대한 규모의 IEEPA 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수 시간 뒤에 10%를 122조에 규정된 최고 관세율인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별 관세율의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한 10~15%의 관세율이 부과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IEEPA 관세와 유사하게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적용세율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동일한 효과가 예상되는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0일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해 한시적 부과가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키로 해 IEEPA 관세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울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301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중국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으로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중국 무역전쟁의 결과로 부과되고 있는 관세이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중국 관세는 2018년 7월과 8월 각각 340억달러,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부과된 25%의 관세, 2019년 5월 부과된 2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부과된 25%관세와 2020년 2월 부과된 3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7.5% 관세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다만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IEEPA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301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특정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국과 협의, 공청회와 관련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해 과거 사례에서는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모든 무역 상대방을 대상으로 301조에 해당하는 조사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122조 기반의 관세부과로 확보한 150일이 부족할 수 있어 보인다.

301조 이외에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는 법률로는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법 201조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행정부가 아닌 독립기관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직접적인 산업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적용이 쉽지 않으며, 관세법 338조는 1930년 제정된 일명 스무트-홀리 법으로 대공황을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안이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을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차별할 때 적용되는 법안이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IEEPA법에 근거한 관세 이후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과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EEPA 관세폐지 영향

트럼프 관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IEEPA 관세가 폐지되면 관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Yale Budget Lab의 추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6%였고 IEEPA관세 위법으로 폐지될 경우 관세율은 9.1%로 하락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키로 한 무역법 122조에 의한 글로벌 관세 15%가 시행될 경우 관세율은 다시 상승 13.7%로 예상된다. 150일 이후 122조 관세가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율 하락에 따른 재정 수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301조 등 새로운 관세 부과 전략이 구체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규모는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은 재정 악화로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동시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관세율 하락에 비례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환급 시 관세를 부담했던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소매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적용될 것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무역협정을 완료한 한국, 일본, EU 등과의 향후 관세율 조정 문제, 대미 투자협정의 이행 방식 문제 등 많은 현안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까지 감안할 경우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확인하는 인내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1 **IEEPA 관세 월별 징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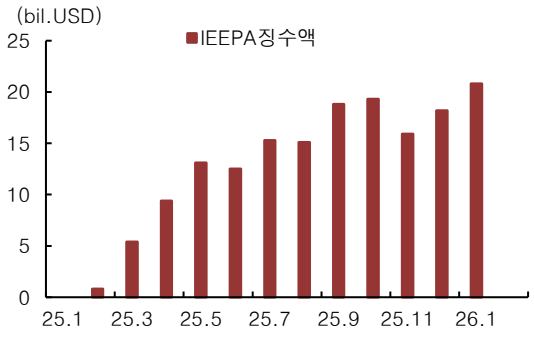

자료: Penn Wharton Budget Model,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전체 관세 수입에서 IEEPA관세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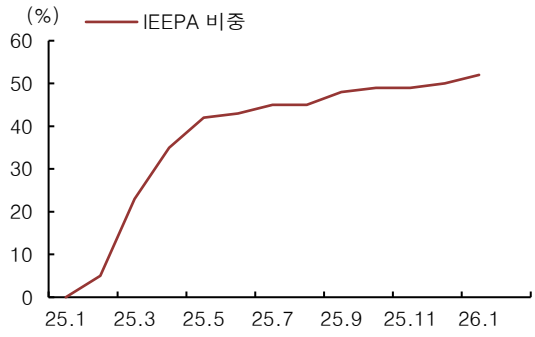

자료: Penn Wharton Budget Model,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Heungkuk
흥국증권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